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인 천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구합5198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원 고	1. A 2. B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12. 1.
판 결 선 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토지분 취득세 228,992,540원, 교육세 21,456,050원, 농어촌특별세 11,449,620원(각 가산세 포함) 및 건물분 취득세 108,219,040원, 교육세 5,794,190원, 농어촌특별세 6,755,58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12. 9. 28. 원고 A에 의하여 소재지를 [redacted]구 D, 목적사업을 플라스틱 사출 · 성형 제조업,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 12. 24. 원고 A이 대표이사로, 2015. 9. 28. 원고들이 공동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현재까지 원고들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원고 A 50%, 원고 B 50%).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전에 플라스틱 사출 · 성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E'을 운영하여 왔는데, 다음과 같이 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바 있다.

(1) 원고들은 2011. 7. 22. [redacted]구 D 소재 공장용지 2,90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의 비율로 취득하여 원고들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1]) 제78조 제4항 본문에 따른

1) 아래 (2)항 기재 건물 취득시점인 2012. 3. 9.이나 아래 다.항 기재 현물출자시점인 2012. 11. 26.을 기준으로 하면 2011. 12. 31. 개정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위 법은 부칙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시점인 2011. 7. 22.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적용 법령이 서로 다르다.
다만 위 각 법령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 단서 규정이 이후 개정 법률에서는 항목을 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144,320,000원을 감면받았다.

(2) 이후 원고들은 2012. 3. 9.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4,991.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2. 3. 16. 이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항과 마찬가지로 신고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 68,203,850원을 감면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2. 6. 20. 당시에는 원고 A을 발기인으로 하는 회사로서 설립 중인 회사였던 이 사건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비롯한 'E'의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을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현물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다'는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1. 26.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E'의 사업용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앞으로 위 현물출자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각 공유 지분의 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로 이전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가 정하는 추징사유인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16. 8. 11. 원고들

꾸어 신설되는 등 규정 형식은 바뀌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토지 취득시점인 2011. 7. 22. 당시 적용되는 법률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관련(근거) 규정을 표시하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에 대하여 토지분 취득세 228,992,540원, 교육세 21,456,050원, 농어촌특별세 11,449,62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261,898,210원 및 건물분 취득세 108,219,040원, 교육세 5,794,190원, 농어촌특별세 6,755,580원(각 가산세 포함) 합계 120,768,8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산업단지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 및 증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용도의 부동산 취득을 장려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려는 감면규정이고, 한편 같은 항 단서는 산업단지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서 이를 2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과 무관하게 투기적 수단으로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추징조항이라 할 것이다. 원고들이 이 사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로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이 주식 100%를 가진 회사로서, 이전에 원고들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E'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법인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회사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그 부동산에서 'E'이 하던 플라스틱 사출·성형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가 정하는 추징사유인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지 아니하고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2014. 12. 31.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 · 양수에 따라 2015. 12. 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현재까지 시한만을 바꾸어(현행법 기준 시한: 2018. 12. 31.) 유지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신설된 취지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 · 양수에 따른 재산이전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다고 봄과 더불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현물출자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까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기왕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가사 원고들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생각하였던 이상 원고들에게 기왕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에 관한 자료를 근거자료로써 제출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 면제사유인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라. 결국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들에 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가산세 등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을 보건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본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산업 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또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사유(취득세의 경우 2012. 12. 31.까지 면제, 재산세의 경우 5년간 경감)를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를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고 한다), 같은 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1문)'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제2문)'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추징조항'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이 사건 면제조항과 추징조항이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 대상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도 그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와 같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각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면제조항은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은 대상자가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인데, 여기에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은 대상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고유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면제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이 사건 추징조항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3097 판결 참조[2]).

2) 해당 판례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미곡종합처리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해당 건물을 인접한 2개의 다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사업을 위하여 이들 조합과 함께 설립한 공동사업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안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면제조항' 및 위 조합 등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조항'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94조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이나, 위 면제조항 및 추징조항이 이 사건 면제조항 및 추징조항과 규정형식과 '직접 사용'이라는 핵심 요건을 같이하므로 해당 판례의 해석론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한편 이 사건 면제조항에서 면제 내지 경감하고 있는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인데, 취득세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게 되고 이를 현물출자에 대한 대가의 수수로 충분히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앞서 본 조세감면 특혜규정에 대한 엄격 해석의 원칙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 증여하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3].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E'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 · 성형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2012. 3. 9. 경이고, 원고들이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2. 11. 26. 이 사건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가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존에 원고들이 'E'이라는 상호로 영위하였던 플라스틱 사출 · 성형 제조업 용도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

이 사건에 있어서도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3) [redacted]조합이 농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의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 등록세를 면제받았다가, 농업회사법인인 자회사를 설립하고서 해당 토지를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통하여 농업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농업협동조합이 면제받았던 취득세 · 등록세를 추징한 사안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해당 농업협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과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청주지방법원 2013. 5. 16. 선고 2012구합255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청주) 2013누414 판결], 대법원은 이에 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바 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6616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E'과 이 사건 회사는 개인기업과 법인으로 서로 법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별개의 납세의무자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면서 그 대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인 이상 이는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을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 사건 회사에 이전하고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종전에 이 사건 면제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대상으로 인정받은 대상자인 원고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면제조항 및 추징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징조항은 이 사건 면제조항으로 국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가산업의 발전과 무관하게 투기적 수단으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고들이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것을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하는 매각·증여 등과 같이 보는 것은 이 사건 추징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데, 이 사건 추징조항 중 제2문은 제1문과는 달리 '정당한 사유' 유무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증여'로 소유자 명의가 달라진 경우에도 추징 대상으로 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고 있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징조항, 특히 그 중 제2문은 당초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납세의무자가 매각·증여 등의 사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나 투기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소유자 명의의 변경이 있기만 하면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또한 원고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4항(이하 '법인전환시 취득세 면제조항'이라 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따른 현물출자가 있으면 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추징조항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서 현물출자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법인전환시 취득세 면제조항은 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법인이 취득하게 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현물출자 등을 받은 해당 법인에 대하여 면제하여 주고 폐업이나 해당 재산 처분의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으로서, 대상 재산이 부동산에 한정되지 않고 그 소재지나 법인전환 등의 시기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조항에서의 현물출자는 취득의 원인이 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제조항 및 추징조항은 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용도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인 데다가 취득의 원인이나 방법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취득자가 일정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기간 내에 매각·증여와 같은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면제·감면되었던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 매각·증여는 취득자의 취득의 원인이 아닌 취득 이후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정인 이상, 법인전환시 취득세 면제조항과 이 사건 면제조항 및 추징조항은 적용대상 및 요건을 전혀 달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법인전환시 취득세 면제조항에 현물출자가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나 다른 용도로의 사용'에서 현물출자가 해석상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한 때로부터 2년 이내임이 명백한 2012. 11. 26.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하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회사에 현물출자된 이후에도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현물출자를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추징조항에서 정하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추징대상임이 분명하고,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훈

판사 이기홍

판사 백우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별지

관련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3-1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